#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40

발의연월일: 2020. 8. 3.

발 의 자:신현영·안민석·김정호

이탄희 · 김병욱 · 이성만

임호선 · 홍정민 · 박 정

고영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 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 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 는 것을 아동학대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고 비호하기 위하여 아동을 비난, 회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의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보호적 비가해부모 등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 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 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 는 것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 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다.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목에 따른 폭력이나 가 혹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 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 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 임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 혹행위를 하는 것 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다.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신 설> 사유 없이 가목에 따른 폭 력이나 가혹행위로부터 아 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7의2. ~ 11. (생 략)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u>2</u>의2. (생략) 3. ~ 7. (생략)

#### 것

7의2. ~ 11.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2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 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7. (현행과 같음)